

문서번호	도시디자인과-3877
결재일자	2016.3.2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디자인기획팀장	도시디자인과장	도시관리국장
박희정	이혜진	박영서	03/23 이기배
협 조	의회법무팀장 신수일		

**2016 광진 띠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 
조성사업 기본 계획(안) 공람 공고**



**도 시 관 리 국**  
(도 시 디 자 인 과 )

# 2016 광진 「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」 조성 사업 기본 계획안 공람 공고

## 1 추진근거

- 2016 광진 「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」 조성 계획 (구청장방침 제264호, 2016.2.29)

## 2 사업지구 지정 목적

「광진의 대표적인 맛의 거리인 미가로」를 2016년 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인 **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** 2015년 공중선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성과 가치를 저해하는 불법·노후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미가로를 조성하기 위함.

## 3 사업개요

- 사업구간 : 자양로18길 (자양로112 ~ 구의로9) 518m
- 사업기간 : 2016. 2. ~ 2016. 11. (10개월)
- 사업지구 규모

(2016. 3. 1 기준)

건물 동수	업소수	간판수	개선지원 업 소 수	비 고
59	249	615	200	사업구간 내 업소 중 표시허가를 득한 업소와 우수한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은 존치 예정이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개소 초과시에도 지원

- 지원규모 : 업소당 2,700천원 이내 (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)
- 지원대상 : 간판개선 대상 지역 신청 업소
-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: 별도계획 수립 시행

- 간판설치 시 주민협약에 의한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
  - 1업소 광고물 총 수량 1 ~ 2개 이내로 축소
  - 광진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디자인 및 표시방법 개발 적용
  - 지하업소 등 벽면에 간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
  - 건물후퇴(3m이상)로 직접 가시권에서 벗어난 업소는 지주이용간판 사유지내 50cm 이격 설치 허용
    - ※ 건물특성, 간판의 디자인상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가이드라인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광고물별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가능

#### **4** 공람공고

- 게재구분 : 공고
- 공고방법 : 구홈페이지
-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- 공 고 안 : 따로붙임